광주광역시도시공사
공고 제2025-317호

2025.11.06.

시민 참여형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
민 간 사 업 자 공 모 질 의 회 신 서

질의회신 유의사항

1. 질의회신은 본 사업의 공모지침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,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2. 사업제안서 작성 시 본 질의회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, 질의 회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사업제안자에게 있습니다.
3.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문, 공모지침, 질의회신이 다른 경우 질의회신, 공모지침, 공고문 순으로 해석합니다.

광주광역시도시공사
Gwangju Metropolitan City Corporation

시민 참여형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질의회신

연 번	질의내용	답변내용
1	❑ **공모지침 제5조7항, 6조2항** ㅇ 사업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, 남향 배치 설계(5조7항),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의 기능 유지·보존(6조2항), 안전성과 환경보호(6조3항) 중 무엇이 상위 원칙인지 우선순위 확인 요청	ㅇ 본 공모 사업제안서 작성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음 ① 안전성과 환경보호(6조3항) → ② 주차장 등 기존 시설물의 기능 유지·보존(6조2항) → ③ 남향 배치 설계(5조7항)
2	❑ **공모지침 제5조7항** ㅇ 정남향 배치가 곤란한 부지의 경우, 기준 방향(정남향) 대비 동측 또는 서측 45° 이내의 방향으로 설치를 허용하는지 확인 요청	ㅇ 정남향 배치가 불가할 경우, 남동향 및 남서향 배치를 허용함.
3	❑ **공모지침 제5조7항** ㅇ 태양광 구조물 설치로 인한 주차면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, 주차장 운영 기준 충족을 전제로 주차면 변동이 허용되는지	ㅇ 주차면 증감은 광주광역시 관리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, 관리부서의 동의가 없을 경우 변경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차면 변동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4	❑ **공모지침 제5조7항** ㅇ 주차면 감소 없이 주차라인 배치 변경이 가능한지	ㅇ 주차면 배치 변경은 광주광역시 관리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. 다만,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 협의가 가능할것으로 예상
5	❑ **공모지침 제6조4항** ㅇ KS인증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등 효율성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경우, 반드시 조달청(나라장터)을 통한 구매만 인정되는지	ㅇ 효율성과 성능이 우수한 제품의 경우, 반드시 조달청(나라장터)를 통한 구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인증 요건을 충족한 제품이라면 일반 구매 절차를 통해 인정